충주평화의집 이용 안내서

1. **계약기간** :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(계약 기간)을 급여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, 장기요양 1~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.

2. **계약목적** :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**입소보증금** :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~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,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.

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-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

- 가.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. (다만,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.)
- 나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.)를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 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4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가. 일반실

(2024년 1월 기준)

구 분			1등급		2등급		3~5등급	
			2.5:1	2.3:1	2.5:1	2.3:1	2.5:1	2.3:1
급여항목	일일수가		80,630	84,240	74,810	78,150	68,990	73,800
	월(30일 기준)		2,418,900	2,527,200	2,244,300	2,344,500	2,069,700	2,214,000
	공단부담금(80%)		1,935,120	2,021,760	1,795,440	1,875,600	1,655,760	1,771,200
	본인부담금(20%)		483,780	505,440	448,860	468,900	413,940	442,800
	감경대상자	(8%)	193,510	202,170	179,540	187,560	165,570	177,120
		(12%)	290,260	303,260	269,310	281,340	248,360	265,680
	기초수급권자(0%)		0	0	0	0	0	0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	해당없음.					
	식대비(1일)	일반식	1일 7,500원(1식 2,500원) - 오전/오후 간식 포함					
		경관/유동식	칼로리 처방전에 의함. 300kca(300ml) 튜브용 = 1,900원					
	이/미용료 등		비청구(자원봉사자 활용)					
총 비 용 (급여+비급여 비용)	일반수급권자(20%)		708,780	730,440	673,860	693,900	638,940	667,800
	감경대상자	(8%)	418,510	427,170	404,540	412,560	390,570	402,120
		(12%)	515,260	528,260	494,310	506,340	473,360	490,680
	기초수급권자		0	0	0	0	0	0

나. 치매전담실-가형

(2024년 1월 기준)

구 분			2등급	3~5등급
급여항목	일일수가		92,260	85,080
	월(30일 기준)		2,767,800	2,477,100
	공단부담금(80%)		2,214,240	2,041,920
	본인부담금(20%)		553,560	510,480
	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(8%)	221,420	204,190
		(12%)	332,130	306,280
	기초수급권자(0%)		0	0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	해당없음.	
	식대비 (1일)	일반식	1일 7,500원(1식 2,500원) - 오전/오후 간식 포함	
		경관/유동식	칼로리 처방전에 의함. 300kca(300ml) 튜브용 = 1,900원	
	이/미용료 등		비청구 (자원봉사자 활용)	
총 비 용 (급여+비급여 비용)	일반수급권자(20%)		778,560	735,480
	감경대상자	(8%)	446,420	429,190
		(12%)	557,130	531,280
	기초수급권자		0	0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.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-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、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6. **계약의 해제** :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을 주거나,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자(보호자)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7. **입소보증금의 반환** :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 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8. **입소절차**

대상자 유형	시.군.구 (읍면동 대리접수)	시.군.구	장기요양기관	장기요양기관
① 기초생활수급노인, ② 기타 의료급여수급자	→ 입소신청 (장기요양인정서 첨부)	→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(공단, 본인 통보)	→ 입소대상자 확인(*) ↓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	→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↓ 서비스 실시
③ 일반노인	→			

9. **입소신청 시 준비사항**

- 장기요양 인정서류 (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
- 건강진단서 1부(결핵검진 포함,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의 진단서)
- 현재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소견서와 복용중인 약 처방전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10. **기관특성 및 우수사례**

- 본 요양원 2015년、2018년 **장기요양평가 2년 연속 A 최우수기관** 선정 수상
- 2020년 11월부터 치매전담실 운영으로 매일 프로그램(인지기능/여가,정서) 진행

인지기능 프로그램(치매전담실 가형)	여가,정서 프로그램(치매전담실 가형)